- (2) 벤젠 등 유독성이 높은 물질 취급 시에는 물리·화학적 특성 및 독성에 관한 정보 등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을 비치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발포 작업 후, 우레탄폼 조각 등의 폐자재는 적재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## 9. 피난계획 및 응급구조

- (1)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(가) 화기작업 영향구역 내에서 취급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
- (나) 화기작업 영향구역 내에서 차단이 필요한 설비, 배관 등에 대한 정보
- (다) 화기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과 안전대책
- (라) 작업시간 및 작업 표지의 내용과 부착
- (마) 필요한 개인보호구,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, 소화장비 등의 수량
- (바) 비상조치 및 대피방법
- (2)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외에 근로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비상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가)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
- (나)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되도록 최단거리가 되도록 할 것
- (다) 비상구의 폭은 0.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.0m 이상으로 할 것
- (라)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할 것
- (3) 비상구·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또한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피경로와 신속한 대피방법을 숙지하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.